TotalEnergies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기준.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10항 1절에 의거함

HYDRANSAFE FR EHC

SDS 번AA00250-0000000021

호: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HYDRANSAFE FR EHC

내부 코드 : 083598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알려진 사용방법

Hydraulic fluids

다. 공급자 정보 :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16층

전화: 02-6320-2000 팩스: 02-6320-2100

ms.ap-sds@totalenergies.com

TotalEnergies Marketing Asia-Pacific Middle East Pte. Ltd.

182 Cecil Street #27-01 Frasers Tower Singapore 069547 Tel: +65 6879 2200

ms.ap-sds@totalenergies.com

긴급전화번호(근무시간과 :

함께)

대한민국: +82 2 3479 8401 아시아-태평양: +65 3158 1074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분류 3

이 제품은 산업안전 및 보건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신호어 : 없음.

유해·위험 문구 : H412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u>예방조치 문구</u>

일반 : 해당 없음.

예방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대응: 해당 없음.저장: 해당 없음.

페기 :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 알려진 바 없음.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성·위험성

최종 개정일자 : 2024/07/19 한국 한국어 **버젼 :**2 1/11



SDS HAA00250-0000000021

호: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조제품 : 혼합물

성분명	관용명	식별자	% (w/w)
diphenyl phosphate and bis(4-tert-butylphenyl) phenyl phosphate and triphenyl phosphate (TPP>=2.5<25%)	Reaction mass of 4-tert-butylphenyl diphenyl phosphate and bis(4-tert-butylphenyl) phenyl phosphate and triphenyl phosphate (TPP>=2.5<25%)	CAS: 68937-40-6	≥95

작업장 노출한계의 자료가 있다면 8항에 기술되어 있음.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즉시 다량의 물로 가끔 윗 눈꺼풀과 아랫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씻어낼 것. 콘택트

렌즈의 유무를 확인하여,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것. 자극이 나타나면 의사

의 진단을 받을 것.

: 다량의 물로 오염된 피부를 씻을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을 것. 증상이 나타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 입을 물로 세척할 것. 물질을 삼켜서 노출된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 마시 라. 먹었을 때

게 할 것. 의료요원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구토을 유도하지 말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증상에 따라 치료할 것. 많은 양을 먹었거나 흡입했을 경우 해독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할 것.

특별 취급 : 특정한 치료법은 없음.

응급 처치자의 보호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유해성 정보를 참조할 것. (11항)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 분말화학소화제, 탄산 가스, 물분무 또는 포말을 사용할 것.

부적절한 소화제 : 봉상주수 물 분무 를 사용하지 말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

정 유해성

: 화재 및 가열되면, 압력은 증가하며 용기는 폭발할 것 임. 본 물질은 수생 생물에 유 해하며 장기적으로 영향이 지속됨. 이 물질로 오염된 소화수가 다른 수로, 하수도,

배수구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인 산화물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

구 및 예방조치

: 소방관은 적절한 보호 장비와 전면 정압 공기 공급형 호흡기가 있는 개인호흡기 (SCBA)를 착용할 것.

소방관을 위한 구체적인

주의사항

: 화재가 날 경우 즉시 모든 사람을 사고 부근으로부터 퇴거시키고 현장을 격리할 것.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최종 개정일자 : 2024/07/19 한국어 버젼 2/11



SDS 번 AA00250-0000000021

호: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인체에 위험이 있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말 것. 변지역을 벗어날 것.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막을 것. 유출된 물질에 접촉하거나 밟지 말 것.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한 조치사항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 제품이 환경 오염(하수, 수로, 토양, 공기)을 발생시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할 것. 수질오염물질. 만약 대량으로 누출되면 환경에 유해할 수 있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

: 위험이 없으면, 누출을 정지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누출된 물질을 비인화성 흡착 물질, 예를 들면 모래, 흙, 질석, 규조토로 흡착하여 용기에 담 은 다음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인가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할 것.

대량 누출

: 위험이 없으면, 누출을 정지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유출물 에 접근할 경우에는 풍상(風上)에서 행할 것. 하수, 수로, 지하 또는 밀폐된 장소로 유입시키지 말 것. 누출된 물질을 비인화성 흡착 물질, 예를 들면 모래, 흙, 질석, 규조토로 흡착하여 용기에 담은 다음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인가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할 것. 오염 흡수 물질은 누출 제품과 동일하게 유해함.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u>안전취급요령</u>

방제 조치

: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8항 참조). 섭취하지 말 것. 눈, 피부 및 의복 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않도록 할 것. 환경으로 배출 하지 마시오. 원래의 용기 또는 혼촉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진 승인된 대체 용기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밀폐하여 보관할 것. 빈 용기가 제품 잔류물을 담 고 있을 수 있으며, 유해할 수 있음. 용기를 재사용하지 말 것.

일반적 산업 위생에 관한

조언

: 이 물질을 취급. 저장. 가공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는 것은 금 지됨. 작업자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을 것. 음식 물 섭취 장소로 들어가기 전 오염된 의복 및 보호 장비를 제거할 것. 위생 방법에 관 한 추가 정보는 8항을 참조.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보관할 것. 건조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직사 광선으로부터 보호하여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며, 배합금지 물질 (10항을 참조) 과 음식 및 음료로부터 멀리 둘 것. 용기는 사용 전까지 밀봉해 둘 것. 개봉한 용기는 주의 깊게 다시 봉한 다음 누출을 방지를 위해 세워 보관할 것. 라벨이 없는 용기에 보관하지 말 것. 적절한 봉쇄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 취급이나 사용 전에 섹션 10의 격리보관 물질을 확인하십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제어 변수

노출기준

없음.

생물학적 노출 지수

알려진 노출 지수가 없습니다.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관리에 충분한 일반 배기장치를 사용할 것.

: 배기 또는 작업 공정 설비로부터의 배출이 환경 보호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 검 환경 노출 관리 토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배출물질을 허용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흄 세정기

(연무 스크러버), 필터, 또는 가공 시설에 대한 공학적 개조가 필요할 것임.

최종 개정일자 : 2024/07/19 한국어 버젼 3/11



SDS 번 AA00250-0000000021

호:

권장 작업장 노출 한계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다.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 위해요소 및 노출 가능성을 근거로, 적절한 표준 또는 인증된 호흡기를 선택하시오.

호흡기는 호흡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하여 적절한 착용, 교육, 및 사용상의 기타

중요한 측면이 보장되도록 한다.

: 위해성 평가 결과, 액체가 튀거나 미스트, 가스, 분진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필요가 눈 보호

> 있으면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보안경을 착용할 것. 접촉이 가능한 경우, 다음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평가가 좀 더 강한 수준의 보호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측

면 차폐형 안전 안경.

손 보호 : 위험 평가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면, 화학 제품을 취급할 때, 승인 기준에 부합되는

내화학성, 불침투성 장갑을 언제나 사용할 것. 장갑 제조자가 명시한 변수를 고려하 여, 사용중 장갑이 그 보호 특성을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할 것. 장갑 물질에 대한 침 투 시간이 장갑 제조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함. 여러 물질로 구

성된 혼합물의 경우, 장갑의 보호시간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음.

탄화수소 방지용 장갑

불화고무 니트릴 고무

장갑 공급자가 제공한 침투성과 파괴시간에 관한 지시를 준수하십시오. 또한 절단

위험성. 마모. 접촉시간 등 제품이 사용되는 특정 현장 조건을 고려하십시오

신체 보호 : Wear work clothing with long sleeves.

Protective shoes or boots.

위생상 주의사항 : 이 화학 제품을 취급한 다음 작업 종료 때,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이용하

기 전에, 손, 팔, 얼굴을 충분히 씻을 것. 의복에 잠재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 절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염된 의복은 재착용 전에 세탁할 것. 눈 세척 장소

와 안전 샤워 시설이 작업 장소와 가깝도록 확실히 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모든 특성의 측정 조건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표준 온도 (20°C / 68°F) 및 압력 (1013hPa)입니다.

가. 외관

물리적 상태 : 액체. [투명]

색 : 투명. 나. 냄새 : 무취.

다. 냄새 역치 : 자료 없음. 라. pH : 해당 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30°C (<-22°F)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 : 220 - 270°C (428 - 518°F)

사. 인화점 : 개방식: 250℃ (482°F) [클리브랜드 개방형 인화점 시험기(COC)]

발화점 : 자료 없음. 아. 증발 속도 : 자료 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 없음. : 자료 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

한/하한

카. 증기압 : 자료 없음.

타. 용해도

매체	결과
물	용해되지 않음

최종 개정일자 : 2024/07/19 하고 한국어 버젼



SDS 번 AA00250-0000000021

호:

물과 혼합 가능: 해당없음.파. 증기밀도: 자료 없음.

하. 비중 : 1.17

밀도 : 1.17 g/cm³ [20℃]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4.85

너. 자연발화 온도 : 565 ℃ (1049°F) **더. 분해 온도** : >300 ℃ (>572°F)

러. 점도 : 다이나믹 (상온): 자료 없음.

동점도 (상온): 자료 없음.

동점도 (40℃ (104°F)): 41.4 - 50.6 mm²/s (41.4 - 50.6 cSt)

흐름 시간(ISO 2431): 자료 없음.머. 분자량: 해당 없음.

입자 특성

중간 입자 크기 : 해당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권장한 방법대로 보관 및 취급하면 안정함. (7항 참조).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일반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 위험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 : 열, 고온 표면, 스파크, 화염 및 다른 발화원들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다. 피해야 할 물질 : 강산화제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인 산화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 : 자료 없음.

에 관한 정보

잠재적 급성 건강 영향

흡입: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먹었을 때: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피부에 접촉했을 때: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눈에 들어갔을 때: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u>과다 노출 징후/증상</u>

흡입: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먹었을 때: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피부에 접촉했을 때: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눈에 들어갔을 때: 명확한 데이터는 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최종개정일자 : 2024/07/19 한국 한국어 **버젼 :**2 5/11



SDS 번AA00250-0000000021

호:

제품/물질	결과	생물종	투여량	노출	시험
Reaction mass of 4-tert- butylphenyl diphenyl phosphate and bis(4-tert- butylphenyl) phenyl phosphate and triphenyl phosphate (TPP>=2.5<25%)	LC50 흡입 증기	쥐 - 숫컷	>0.4 mg/l	6 시간	-
	LD50 경피	토끼	>2000 mg/ kg	_	OECD 402
	LD50 경구	쥐	>5000 mg/ kg	_	_

결론/요약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자극성/부식성

지부 :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눈 :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호흡기 :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u>과민성</u>

지부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호흡기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 OSHA 제42조 작업 노출 한계

자료 없음.

<u>변이원성</u>

결론/요약 :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u>발암성</u>

결론/요약 :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생식독성

결론/요약 :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최기형성

결론/요약 :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 없음.

결론/요약 :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 없음.

결론/요약 :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흡인 유해성 자료 없음.

결론/요약 :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거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u>만성 징후와 증상</u>

만성 독성

일반: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발암성: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변이원성: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생식독성: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최종 개정일자 : 2024/07/19 한국 한국어 **버젼 :**2 6/11



SDS 번AA00250-0000000021

호: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 없음.

<u>독성의 수치적 척도</u>

급성 독성 추정치

제품/물질	경구 (mg/ kg)	경피 (mg/ kg)	흡입 (가스) (ppm)	흡입 (증기) (mg/l)	흡입 (먼지 및 미스트) (mg/l)
Reaction mass of 4-tert-butylphenyl diphenyl phosphate and bis(4-tert-butylphenyl) phenyl phosphate and triphenyl phosphate (TPP>=2.5<25%)	N/A	2500	N/A	N/A	N/A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가. 생태독성

제품/물질	결과	생물종	노출	시험
Reaction mass of 4-tert- butylphenyl diphenyl phosphate and bis(4-tert- butylphenyl) phenyl phosphate and triphenyl phosphate (TPP>=2.5<25%)	급성 EC50 2.6 mg/l	-	96 시간	-
	급성 EC50 3 mg/l	조류(藻類) - 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96 시간	_
	급성 EC50 3.9 mg/l	물벼룩 - Daphnia magna	48 시간	-
	급성 LC50 3.4 mg/l 만성 NOEC 0.194 mg/l 담수	물고기	96 시간 90 일	- OECD 215

나. <u>잔류성 및 분해성</u>

결론/요약 : 쉽게 생물 분해됨

제품/물질	수중 반감기	광분해	생물 분해성
YDRANSAFE FR EHC	_	_	쉬움
Reaction mass of 4-tert-	_	_	쉬움
butylphenyl diphenyl			
phosphate and bis(4-tert-			
butylphenyl) phenyl			
phosphate and triphenyl			
phosphate			
(TPP>=2.5<25%)			

다. <u>생물 농축성</u>

제품/물질	LogK _{ow}	BCF	잠재적 생물 농축성
HYDRANSAFE FR EHC	4.85	_	유

최종 개정일자 : 2024/07/19 한국 한국어 **버젼 :**2 7/11



SDS 번 AA00250-0000000021

호:

라. 토양 이동성

토양/물 분배 계수(Koc)

: 자료 없음.

토양 이동성

: 이 제품은 물리 화학적 특성상 일반적으로 낮은 토양 이동성을 보인다. 증발 손실이

제한된다 본 제품은 불용성이며 물 속에 침전됩니다

마. 기타 유해 영향 :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가능한 폐기물 생성을 피하거나 최소로 할 것. 이 물질과 용액, 부산물은 언제나 그지역의 환경보호법과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이나 쓰고 남은 제품은 허가된 폐기물 외주업자를 통하여 처리할 것. 폐기물은 해당지역의 모든 관련 정부기관의 의무사항을 준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절대로 하수로 폐기되어서는 안됨. 사용된 포장용기는 재활용 되어야 함.소각 또는 매립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함.

나. 폐기시 주의사항

: 제품 및 그 용기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세척되거나 행궈지지 않은 빈용 기를 취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함. 빈 용기 또는 라이너에 제품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음. 유출된 물질이 분산되거나 유수가 토양, 수로, 배수 및 하수와 접촉하는 것 을 피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ADR	IMDG	ICAO/IATA
가. UN/ID 번호	규제되지 않음.	규제되지 않음.	규제되지 않음.
나. 유엔 적정 선적 명	_	규제되지 않음.	규제되지 않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 성 등급	_	규제되지 않음.	규제되지 않음.
라. 용기등급	_	규제되지 않음.	규제되지 않음.
마. 환경 유해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 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사용자의 구역 내에서의 운반**: 항상 밀폐 용기에 담아 똑바로 세워 안전하게 운반할 것.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출되었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품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주지시킬 것.

IMO 협정에 따른 벌크 운송 : 자료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조 등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조 등의 허가)

최종 개정일자 : 2024/07/19 한국 한국어 **버젼 :**2 8/11



SDS 번AA00250-0000000021

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유해약물

: 해당 없음.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작업노출기준이 있는 성분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 출농도의 허용기준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11항(화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금지물질)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허가 대상(한국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제2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 해당 없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유독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사고대비물질)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성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 규제되지 않음.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관련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제 규정

화학 무기 금지 협약 목록 지정 1, 11 & 111 화학물질

등재되어 있지 않음.

최종 개정일자 : 2024/07/19 한국 한국어 버젼 9/11



SDS HAA00250-0000000021

호:

몬트리올 프로토콜

등재되어 있지 않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등재되어 있지 않음.

<u>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PIC)</u>

등재되어 있지 않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중금속에 대한 UNECE 오르후스 의정서

등재되어 있지 않음.

인벤토리 등재 여부

호주의 기존 화학물질목록(AIIC): 모든 성분은 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면제됨.캐나다의 기존 화학물질목록: 모든 성분은 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면제됨.중국의 기존 화학물질목록(IECSC): 모든 성분은 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면제됨.유럽의 기존 화학물질목록: 모든 성분은 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면제됨.

일본의 기존 화학물질목록 : **일본의 기존 화학물질목록(CSCL)**: 모든 성분은 목록에 등재되

었거나 면제됨.

일본의 기존 화학물질목록(ISHL): 최소한 한 가지 성분이 등재

되어 있지 않음.

뉴질랜드 화학물질 목록(NZIoC): 최소한 한 가지 성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음.필리핀의 기존 화학물질목록(PICCS): 모든 성분은 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면제됨.한국의 기존 화학물질목록(KECI): 모든 성분은 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면제됨.Taiwan Chemical Substances Inventory (TCSI): 모든 성분은 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면제됨.

태국 목록: 결정되지 않음.Turkey inventory: 결정되지 않음.

미국의 기존 화학물질목록(TSCA 8b) : 모든 성분은 목록에 등재되었거나 면제됨.

베트남 목록 : 결정되지 않음.

이 항목에 기재된 정보는 국가 별 인벤토리에 대한 화학 제품의 적합성에만 관련이 있는 정보입니다. 이 제품의 인벤토리 등재 현황을 확인하는데 활용된 정보는 3번 항목에 기재된 구성성분 정보 외에 추가 정보가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수입 또는 판매 허가 시에는 다른 법규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 화학 물질의 독성 영향 등록부

- 미국환경보호국 ECOTOX

나. 최초 작성일자: 2/21/2023다. 최종 개정일자: 2024/07/19이전 호 발행일: 2024/07/19

라. 버젼 : 2

마. 기타

▶ 이전 호와 변경된 정보를 나타냅니다.

약어 해설 : ATE = 급성독성 추정치

BCF = 생물 농축 계수

GH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IATA =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BC = 중형산적 용기

IMDG =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 LogPow = 물/옥탄올 분배계수의 로그값

MARPOL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8년 의정서

("Marpol" = 해양오염물질)

N/A = 자료 없음

최종 개정일자 : 2024/07/19 한국 한국어 *버젼* :2 10/11



SDS 번AA00250-0000000021

호:

SGG = 분리 그룹 UN = 국제 연합

주의

여기에 기술된 정보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 담긴 정보에 대한 정확성 혹은 완전성에 대해 위에 언급된 공급자나 그 자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질의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모든 물질에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 요소가 내 재되어 있으므로 취급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기술된 위험성 이외에 다른 위험들이 잠재하고 있을 수 있습 니다.

최종 개정일자 : 2024/07/19 한국 한국어 **버젼 :**2 11/11